

취업규정

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이사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5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2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3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4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

제62조의 제목 “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”를 “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”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은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”를 “임직원은”으로 하고, “말한다”를 “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9조의5 개정사항은 공무원 등 기간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법정휴가 및 임신부의 보호) ① ~ ⑧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7조(법정휴가 및 임신부의 보호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<u>⑨ 이사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,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29조의5(장기재직휴가) ① 장기 재직 한 직원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u><신 설></u></p> <p>1. <u>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</u> 2. <u>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</u> 3. <u>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9조의5(장기재직휴가) ① 장기 재직 한 직원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<u>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</u> 2. <u>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</u> 3. <u>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</u> 4. <u>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2조(<u>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</u>) <u><신 설></u></p> <p><u>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,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, 견책, 정직, 휴직, 전직, 대기발령,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 조치를 행한다.</u></p>	<p>제62조(<u>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</u>) ① <u>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② <u>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,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, 견책, 정직, 휴직, 전직, 대기발령,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 조치를 행한다.</u></p>

제64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) ①

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·직원이 직
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
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
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
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
키는 행위를 말한다.

② (생략)

제64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) ①

임·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
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
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
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
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
아니 된다.

② (현행과 같음)